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01호 2023. 2. 28.(화)</p>	
---	---	---

선 결	기관의 장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27호	거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23-30호	도로명주소 고시	11
거창군 고시 제2023-31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1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341호	2023년도 제1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17
거창군 공고 제2023-347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거창군 공고 제2023-348호	공인 등록 공고	33
거창군 공고 제2023-349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거창군 공고 제2023-369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3
거창군 공고 제2023-372호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49
거창군 공고 제2023-379호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2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6	3	답	1219	1219		법무부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1	답	4706	4706		법무부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2	답	1481	1481		법무부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3	답	1277	1277		법무부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4	답	3483	3483		법무부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5	답	3839	3839		법무부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6	답	1377	1377		법무부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7	답	2184	2184		법무부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9	답	2957	2957		법무부			
	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14	답	54	54		법무부			
	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15	답	209	209		법무부			
	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8	2	도로	109	109		법무부			
	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9	1	답	585	585		법무부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78	1	답	265	265		법무부			
	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79	1	답	1271	1271		법무부			
	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7	전	658	658		법무부			
	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8	전	995	995		법무부			
	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9	임야	60	60		법무부			
	1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10	전	380	380		법무부			
	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14	임야	6804	6804		법무부			
	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0		전	264	264		법무부			
	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2	1	답	8	8		법무부			
	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4		답	44	44		법무부			
	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5		답	1899	1899		법무부			
	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답	458	458		법무부			
	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3	답	990	990		법무부			
	2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4	답	540	540		법무부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5	답	66	66		법무부			
	2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6	답	1022	1022		법무부			
	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7	답	377	377		법무부			
	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8	답	410	410		법무부			
	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9	답	382	382		법무부			
	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3	답	925	925		법무부			
	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4	답	347	347		법무부			
	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5	답	358	358		법무부			
	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6	답	349	349		법무부			
	3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8	답	275	275		법무부			
	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9	답	314	314		법무부			
	3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0	답	289	289		법무부			
	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1	답	281	281		법무부			
	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2	답	291	291		법무부			
	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3	답	307	307		법무부			
	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5	답	50	50		법무부			
	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6	답	263	263		법무부			
	4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7	답	111	111		법무부			
	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8	답	228	228		법무부			
	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답	104	104		법무부			
	4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2	답	21	21		법무부			
	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4	답	2	2		법무부			
	5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7	임	504	504		법무부			
	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8	창	183	183		법무부			
	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9	창	53	53		법무부			
	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13	임	806	806		법무부			
	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잡	1454	1454		법무부			
	5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4	답	61	61		법무부			
	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5	답	12	12		법무부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6	잡	133	133		법무부			
	5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9		답	22	22		법무부			
	5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9	1	답	10	10		법무부			
	6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	39	전	3	3		법무부			
	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4	1	전	357	357		법무부			
	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4	2	답	301	301		법무부			
	6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4	전	287	287		법무부			
	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10	전	1223	1223		법무부			
	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11	전	179	179		법무부			
	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12	전	392	392		법무부			
	6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20	전	559	559		법무부			
	6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0	전	615	615		법무부			
	6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1	전	661	661		법무부			
	7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2	전	88	88		법무부			
	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3	전	154	154		법무부			
	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4	전	122	122		법무부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64	전	62	62		법무부			
	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전	430	430		법무부			
	7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	대	364	364		법무부			
	7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4	전	294	294		법무부			
	7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5	답	284	284		법무부			
	7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8	임	472	472		법무부			
	7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9	임	153	153		법무부			
	8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1	전	1563	1563		법무부			
	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2	전	167	167		법무부			
	8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3	전	398	398		법무부			
	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4	전	581	581		법무부			
	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5	임	581	581		법무부			
	8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6	임	617	617		법무부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8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8	목	83	83		법무부			
	8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2	전	517	517		법무부			
	8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3	전	432	432		법무부			
	8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4	전	224	224		법무부			
	9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5	목	588	588		법무부			
	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6	목	11	11		법무부			
	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7	목	62	62		법무부			
	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8	목	14	14		법무부			
	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7		답	1190	1190		법무부			
	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7	1	임	785	785		법무부			
	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8		답	1521	1521		법무부			
	9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답	1398	1398		법무부			
	9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	대	609	609		법무부			
	9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	전	360	360		법무부			
	1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4	전	1271	1271		법무부			
	1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9	대	835	835		법무부			
	1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0	대	868	868		법무부			
	10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1	대	225	225		법무부			
	1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2	대	426	426		법무부			
	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3	대	276	276		법무부			
	1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4	대	301	301		법무부			
1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5	대	365	365		법무부				
10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6	대	396	396		법무부				
10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7	대	504	504		법무부				
1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8	대	121	121		법무부				
1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9	대	239	239		법무부				
1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0	대	122	122		법무부				
1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1	대	171	171		법무부				
1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2	대	256	256		법무부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1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3	대	208	208		법무부			
	1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4	대	255	255		법무부			
	1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5	대	237	237		법무부			
	1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6	전	131	131		법무부			
	11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7	전	409	409		법무부			
	1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8	전	167	167		법무부			
	1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9	전	252	252		법무부			
	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0	전	700	700		법무부			
	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1	전	928	928		법무부			
	1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2	전	702	702		법무부			
	1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3	전	1139	1139		법무부			
	1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4	전	773	773		법무부			
	12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0		답	1904	1904		법무부			
	1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답	1864	1864		법무부			
	12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	전	489	489		법무부			
	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2	전	418	418		법무부			
	1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3	대	122	122		법무부			
	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5	전	150	150		법무부			
	1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6	전	143	143		법무부			
	1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7	전	163	163		법무부			
	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8	전	256	256		법무부			
	1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9	전	156	156		법무부			
	13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0	전	377	377		법무부			
	1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1	전	106	106		법무부			
13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2	전	411	411		법무부				
1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3	전	96	96		법무부				
1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4	전	653	653		법무부				
1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5	전	85	85		법무부				
1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2		묘	770	770		법무부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1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3	1	답	1547	1547		법무부			
	14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3	2	답	1319	1319		법무부			
	1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3	3	답	684	684		법무부			
	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답	3217	3217		법무부			
	14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2	임	274	274		법무부			
	1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3	임	190	190		법무부			
	15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4	임	202	202		법무부			
	1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5	임	499	499		법무부			
	1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6	임	62	62		법무부			
	1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7	임	243	243		법무부			
	1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8	임	429	429		법무부			
	15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9	임	839	839		법무부			
	1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0	임	94	94		법무부			
	1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1	임	466	466		법무부			
	15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4	임	9496	9496		법무부			
	15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5	임	69	69		법무부			
	16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5		답	2539	2539		법무부			
	1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6		답	4258	4258		법무부			
	1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7		답	43	43		법무부			
	16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3	답	911	911		법무부			
	1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7	답	250	250		법무부			
	1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8	답	262	262		법무부			
	1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9	답	1689	1689		법무부			
16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10	답	1612	1612		법무부				
16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11	답	403	403		법무부				
16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0		답	1356	1356		법무부				
17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0	1	답	2290	2290		법무부				
1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1		전	136	136		법무부				
1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2		답	998	998		법무부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1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3		답	1525	1525		법무부			
	1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3	1	답	1457	1457		법무부			
	17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4		답	2360	2360		법무부			
	17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5		답	3260	3260		법무부			
	17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5	1	구	199	199		법무부			
	17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6	2	답	711	711		법무부			
	17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6	3	전	716	716		법무부			
	18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7		전	1574	1574		법무부			
	1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8		전	1557	1557		법무부			
	18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9	2	전	1712	1712		법무부			
	1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8	임	271	271		법무부			
	1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0	목	543	543		법무부			
	18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1	목	283	283		법무부			
	18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2	임	188	188		법무부			
	18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3	임	232	232		법무부			
	18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5	답	63	63		법무부			
	18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6	답	617	617		법무부			
	19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7	목	1644	1644		법무부			
	1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8	목	691	691		법무부			
	1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9	임	34	34		법무부			
	1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20	답	646	646		법무부			
1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1	8	답	75	75		법무부				
1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1	9	답	532	532		법무부				
1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8	1	답	2	2		법무부				
19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4	2	답	1224	1224		법무부				
19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4	3	답	222	222		법무부				
19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5		답	450	450		법무부				
2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6	1	전	882	882		법무부				
2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9	3	구	324	324		법무부				

구분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당초	2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6	12	구	4734	4734		법무부			
	20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6	13	구	442	442		법무부			
	2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7		도	293	293		법무부			
	2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7	2	도	323	323		법무부			
	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31	2	도	96	96		법무부			
	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31	3	도	372	372		법무부			
	20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13	9	임	20	20		법무부			
	20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16	35	임	116	116		법무부			
	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03	8	전	45	45		법무부			
	2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5	8	임	259	259		법무부			
	2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6		임	1686	1686		법무부			
	2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7	2	임	1186	1186		법무부			
	2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03	12	전	163	163		법무부			
	2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5	15	임	151	151		법무부			
	변경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59		대		154,079.0		법무부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70		대		3,190.7		법무부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71		대		309.5		법무부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서편길 65-6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3. 2. 28.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2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가조면	변경 전	가조가야로	가조면 동례리 286-3 (가조가야로 942-1)	가조면 동례리 337-1 (가조가야로 942-24)	도면참조	9	없음	종속구간 변경	직권
		변경 후	가조가야로	가조면 동례리 286-1 (가조가야로 942-1)	가조면 동례리 337-19 (가조가야로 942-118)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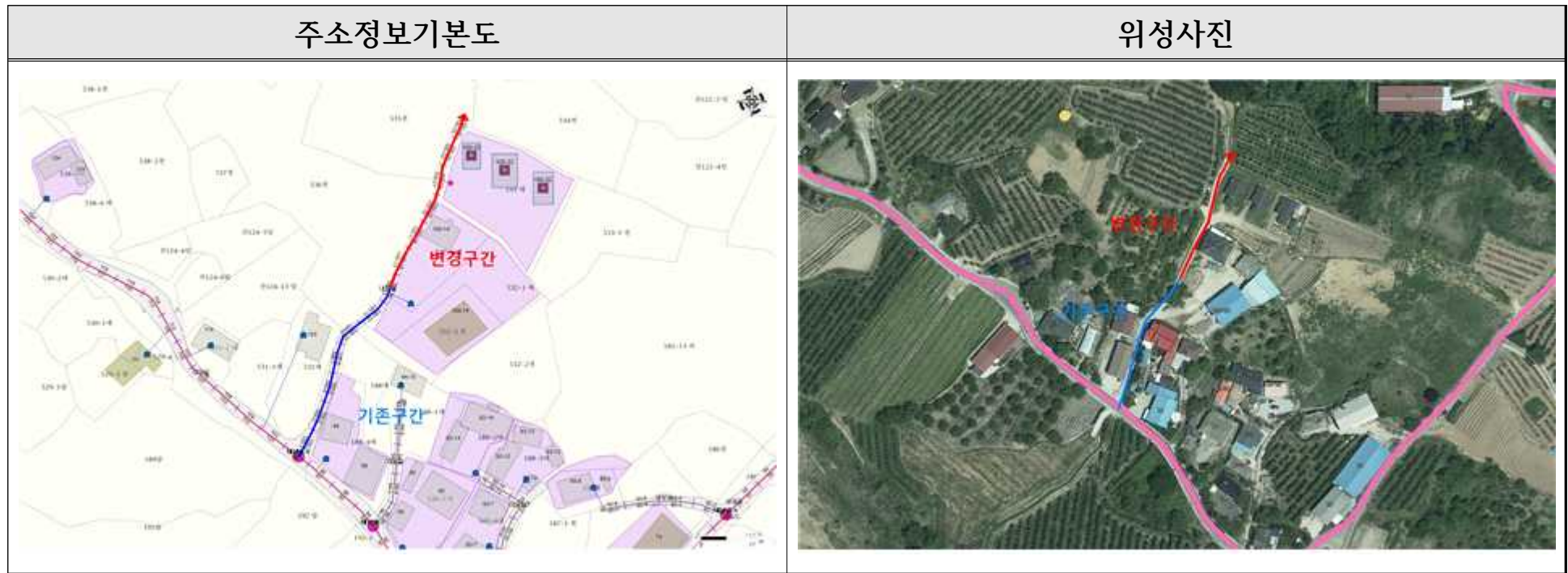
주소정보기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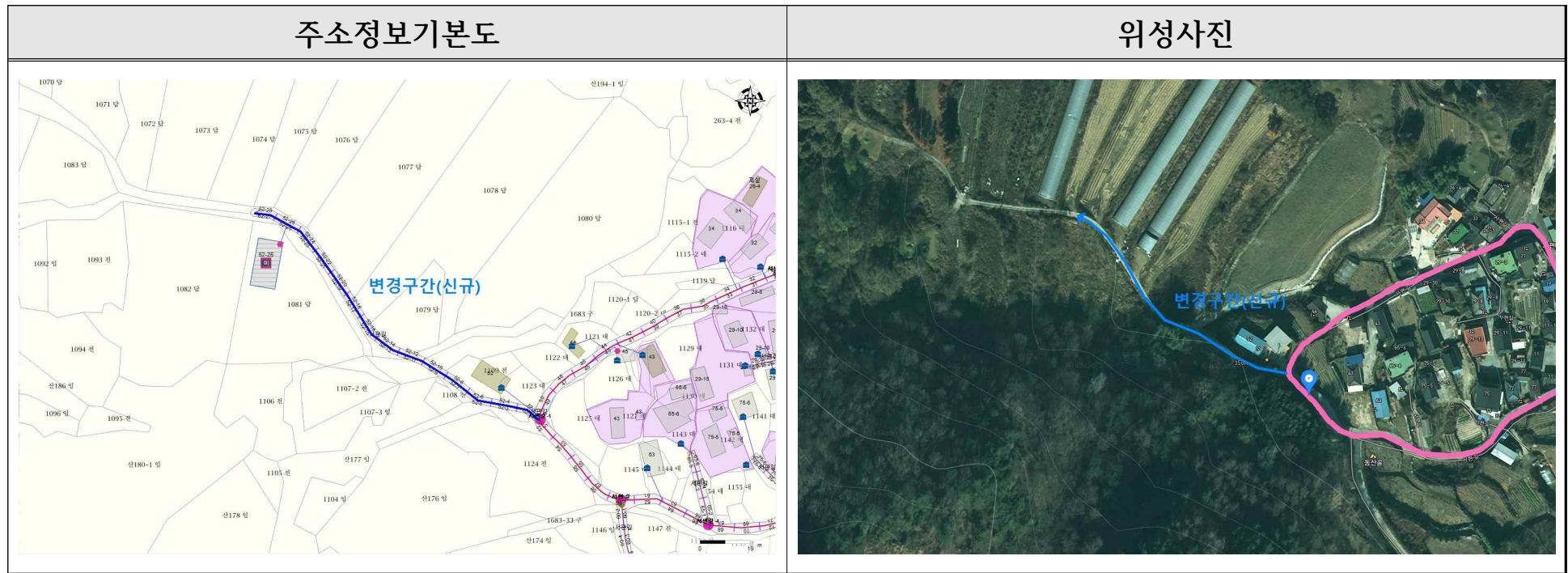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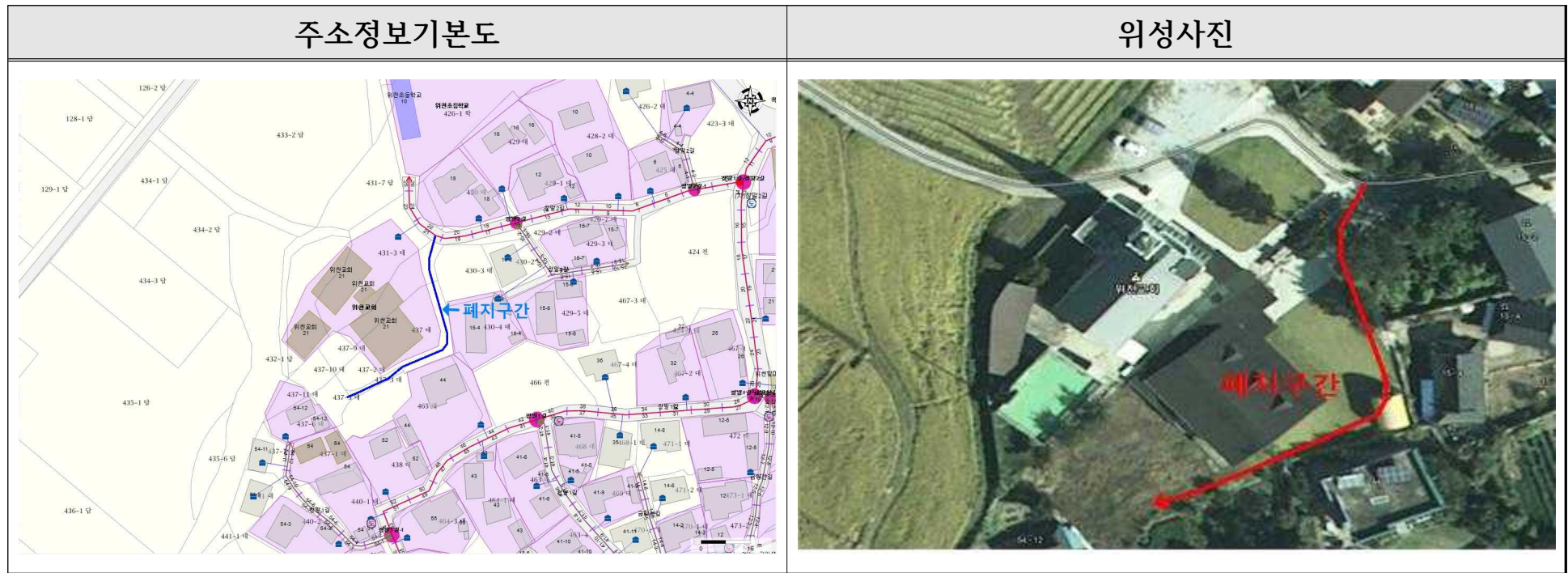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2	고제면	변경 전	내당길	고제면 봉계리 531 (내당길 100-1)	고제면 봉계리 536 (내당길 100-14)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변경	직권
		변경 후	내당길	고제면 봉계리 531 (내당길 100-1)	고제면 봉계리 535 (내당길 100-26)	도면참조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3	마리면	변경 전	서편길	마리면 대동리 1726 (서편길 52)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생성	직권
		변경 후	서편길	마리면 대동리 1726 (서편길 52-1)	마리면 대동리 1074 (서편길 52-28)	도면참조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4	위천면	변경 전	창말2길	위천면 장기리 431-3 (창말2길 21-1)	위천면 장기리 437-5 (창말2길 21-16)	도면참조	0	없음	종속구간 폐지	직권
		변경 후	창말2길	위천면 장기리 431-3 (창말2길 21)		도면참조				



2023년도 제1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1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무대기계	일반임기제 (공업7급)	1명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다급)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무대기계 (공업7급)	<p><필수요건>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분야) 3급이상 취득인 자</p> <p><일반요건> 1. 학사학위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안전관리자 (시간선택 제임기제 다급)	<p><필수요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p>* 관련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p> <p><일반요건> 1. 학사학위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 한 경력</p>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무대기계	일반임기제 (공업7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기계 설비 운영 ○ 상.하부 무대기계 시설물 관리 ○ 무대기계 조정실 관리 ○ 공연 시설물 안전성 확보
안전 총괄과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진정 사건 등 대응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구 분	인 원	분 야	직 급	임용기 간	근무시간	비 고
일 반 임기제	1명	무대기계	공업7급 (일반임기제)	2년	주당 40시간	
시간 선택제 임기제	1명	안전관리 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2년	주당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 등을 감안하여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상당)	64,776	46,006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6,679	40,260	주 35시간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3. 3. 13 ~ 3. 15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3.3.16.(목)	2023.3.22.(수) 거창군청	2023.3.23.(목)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 7,000원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필요시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전형결과 적임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 삭제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삭제(안 제3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2) 변경: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기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 2) 전화 055-940-3712, 팩스 055-940-3349, 이메일: falsalee@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055-940-3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및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삭 제></p>
<p><u>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 개정이유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연장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23. 5. 16.)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공인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4.

거창군수

1. 등록 및 폐기 사유 : 위원회 명칭 변경
2. 등록 공인
 - 가. 등록 공인 : 1점
 - 나. 최초 사용일 : 2023. 2. 24.
3. 폐기 공인
 - 가. 폐기 공인 : 1점
 - 나. 폐기일 및 방법 : 2023. 2. 24./ 거창군 기록관(문서고) 이관.
4. 등록 및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인명	규격 (cm)	인영	공인명	규격 (cm)	인영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	3.0×3.0		거창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	2.0×2.0	

거창군 공고 제2023-349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이장의 업무에 재난재해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복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가.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명·제1조 등)
 - 나. 이장의 업무 추가(안 제2조)
 - 다. 실비보상 현행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사항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169), 이메일(xodhks7108@korea.kr)
- 라. 제출기한 : 2023. 3. 16.(목) 18:00까지 도달
-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 바. 문의전화 : 055-940-3184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실비변상”을 “실비 보상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제4조제2항 중 “상여금”을 “상여금·회의참석수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을 “군수는 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체육·수련대회(군단위)”를 “군단위 체육·수련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신요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u>실비변상</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이장의 업무) ① (생략)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p> <p>제4조(실비변상) ① (생략)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u>관할 군수가</u> 정하는 바에 따라 <u>각종 잡부금을 면제</u>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p> <p>제6조(사기진작) <u>이장의</u>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5. 체육·수련대회(군단위): 연 1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u>실비 보상</u>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이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 (현행과 같음) 5. <u>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u></p> <p>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p> <p>제4조(실비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u>회의참석수당</u>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u>군수가</u> 정하는 바에 따라 <u>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u>받을 수 있다.</p> <p>제6조(사기진작) <u>군수는</u>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u>군단위</u> 체육·수련대회: 연 1회 6. <u>통신요금</u></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9. 3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준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연 50,000원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통신비 지원관련 의견22-0140)

1.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2.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장에게 통신요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인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러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2. 제안이유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필요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 2028년 12월 31일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환경과

- 1) 주소 : (우 510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 2) 전화 055-940-3512, 팩스 055-940-3759, 이메일: green301@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수질관리담당(☎055-940-35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우리군은 장사문화 변화 추세에 따른 화장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례비용 절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거창군수

1. 공모(신청)기간 : 2023. 2. 27. ~ 2023. 4. 27.(60일간)

※ 신청서 교부 장소 : 군청 홈페이지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건립 후보 해당 읍·면 유치위원회 대표자

(별도 유치위원회 구성 필요)

○ 신청단위 : 읍·면 단위 신청

3. 신청방법

○ 유치위원회 대표자 명의로 해당 읍·면을 경유하여 신청서 제출

○ 주민 동의서는 해당 읍·면의 마을단위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민)

※ 신청서식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4. 접수처 : 건립 후보 신청지역 읍·면을 경유하여 군청 전략담당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940-3378)로

문의 바랍니다.

5. 지역개발(인센티브) 지원계획

- 지원기간 : 준공 후 10년 이내
- 지원지역 : 화장시설 소재 해당 읍·면

구분	지원시기	지 원 내 용	비 고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준공후 10년간	주민숙원사업 지원	50억원 이내
수익금 배분	준공후 10년간	매년 화장장 수익금 배분	화장장 수입의 10%이내
운영권 부여	준공후 10년간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부대시설로 매점, 식당, 카페 등을 설치할 경우
일자리 제공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면제	※ 읍 경우 별도로 정함

※ 지원사업은 별도 조례 제정 및 세부협약에 따름

6. 사업개요

- 시행기관 : 거창군
- 사업기간 : 2022. ~ 2026. (5년)
- 위 치 : 거창군 일원
- 사업규모
 - 부 지 : 15,000㎡ 이상
 - 주요시설 : 화장시설(화장로 3기), 유택동산 등
 -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

7. 선정절차

- 가. 신청지역이 1개소일 경우
 - 법적 제한사항 또는 기타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 심의 후 선정

나. 신청지역이 다수일 경우

- 1차 심사 : 서면심사 ※ 필요시 유치위원회 설명
- 2차 심사 : 현장심사(신청지역 주변 환경 현황 등 파악)
- 3차 심사 : 대상지 타당성 조사 및 추진위원회 심의 후 선정
- * 1차 및 2차에서 부지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
- * 최종3차 심사에서 배점표에 의한 최고 득점 후보지를 선정

8. 선정기준

연번	구분	고려사항	비고
1	주민동의	신청지역 주민의 동의율	
2	접 근 성	진입도로 유무	
3	경 제 성	공시지가, 지장물, 주변도로 이격거리	
4	법령저촉	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5	환 경 성	대상지 지형 및 생태훼손 가능성	
6	민원요소	집단민원발생	
7	개발용이성	부지확보 용이 및 인근주거지와와의 거리	
8	확 장 성	부지확장 가능성	
9	안 전 성	지형지질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10	사업용이도	신청지역 토지소유자 승낙률	
11	인센티브	인센티브 요청의 적절성	
12	기 타	심사위원 종합평가 및 의견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법에 저촉되는 지역 제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한지역 등)
- 공고내용 중 이견이 있을 경우 거창군 해석에 따름
- 허위사실 및 착오 기재, 구비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해당 유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함

10. 구비서류

- 1) 유치신청서 1부.
- 2) 유치위원회 회의록 1부.
- 3) 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등록부 1부.
- 4) 유치위원회 세부회의록 1부.
- 5) 주민동의서 1부.
- 6) 후보지 지번별 조서 1부.
- 7) 토지소유자 매도 확약서 1부.
- 8) 읍·면장 검토서 1부.
- 9) 주민지원(사업) 요청서 1부.

서식 1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 유치신청서

신청 읍·면	_____읍·면	가구/ 인구수	세대 명
위원회 현황	명칭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집) 휴)
신청 지역	읍(면) 외	리 번지 필지	총면적 m ²
주민 동의현황	찬성 (동의자)	총명중 명동의	동의율 %

위와 같이 _____읍·면 면민의 동의를 받아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_____월 _____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 : _____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위원회 회의록 1부. 2. 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등록부 1부. 3. 유치위원회 세부회의록 1부. 4. 주민동의서 1부. 5. 후보지 지번별 조서 1부. 6. 토지소유자 매도 협약서 1부. 7. 읍·면장 검토서 1부. 8. 주민지원(사업) 요청서 1부.
------	---

서식 2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 유치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읍·면명	일시	장소	위원회인원	참석수
	2023. . .			

2. 토의내용

○ 회 의 명 :

○ 주요참석자 :

○ 주 요 내 용

.
. .

※ 주요참석자 표기(이장자율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등)

3. 결의사항

○

첨부 1. 회의 참석자 등록부 1부.

2. 세부 회의록 1부.

2023년 월 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 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등록부

- 읍·면 :
- 일 시 : 2023년 월 일(요일) 00:00
- 장 소 :

구분	주소	성명	서명	비고
이장자율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상기와 같이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에 따른
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등록부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4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
유치위원회 세부회의록

읍·면

회의명

회의록

[위원회 대표 ○○○] :

회의진행 발표자 표기,
발표순서로 기록내용 표기

상기와 같이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에 관한
회의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유치위원회 세부회의록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 ○○○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 주민 동의서

<신청지역>

- 위 치 : 읍·면 리
- 지 번 : 번지 외 필지
- 면 적 : m²

○ 마을명 : _____ 마을(총 _____ 명 중 _____ 명 동의)

연번	주 소	성명	서명, 날인, 지장	비 고

상기와 같이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에 따른
주민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 ○○○ (인)

거창군수 귀하

※ 주소, 성명은 대리 작성이 가능하나 서명, 날인, 지장은 직접하여야 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 후보지 지번별 조서

대 상 지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 지번별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상기와 같이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신청에 따른
후보지 지번별 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 ○○○ (인)

거창군수 귀하

읍·면장 검토서

대상지역	읍·면 리 번지 일원
후 보 지 주변현황	
접 근 성	
지역여론	
제출서류 검토결과	
종합검토의견	

상기와 같이 읍·면 종합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 ○ 읍·면 장 (직인)

거 창 군 수 귀하

주민지원(사업) 요청서

지원(사업)명	1. 2. 3.
지원사업 요청규모(내용)	※ 별첨 작성 가능 - - -
지역여론	
상기와 같이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유치신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유치위원회 대표 ○○○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과태료 등의 관리와 주차환경개선 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 나. 세출 삭제함(안 제4조)
 - 1) 근거: 「주차장법」제21조2제4항
 - 2) 내용: 전국적 통일을 위해 특별회계 용도 신설
 - 다. 법령 재기재 등 정비(안 전 조문)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528), 이메일(ljh0708@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 3. 20.(월) 18:00까지 도달

마.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건설교통과)

바. 문의전화 : 055-940-3385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財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중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를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로 한다.

별지 제1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u></p>	<p><삭 제></p>
<p><u>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7조제1항·제3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폐지</u> <u>2. 법 제8조, 법 제13조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u> <u>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외,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u> <u>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중 특별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에 한정함</u> <u>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주차관련 사업</u> 	<p><삭 제></p>

제5조(세입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財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 2022.6.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 등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에 광역시의 보조금을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1조의2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